



##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신자 : 내부결재

(경유)

참 조 :

제 목 : KS F 3109(문세트) 개정에 따른 손끼임방지장치 관련 설계변경 방침결정  
(1면 설치 → 2면 설치, 관련 품질시험비 설계변경 반영)

1. 대구경북주택사업1부-1764(2021.03.08)호 「KS F 3109(문세트) 개정 안내」 관련입니다.
2. 실내문 손끼임방지장치 관련 KS 기준이 위 호와 같이 개정되고, 이의 시행일 '21.01.26일 임에 따라 이의 개정 사항을 현장 적용하고,(붙임 : KS 개정 시행 관련 유권해석 참조)
3. 아래 시방서 12010 품질관리 1.8.1 다. 조항 준수와 이의 미준수로 인한 추후의 입주자 민원(또는 기획소송)과 수급인과의 하자 분쟁 등의 예방을 위해

- 아 래 -

1.8.1 다. 수급인은 한국산업표준(KS) 및 단체표준 등(이하 “한국산업표준(KS) 등”이라 한다)의 개정으로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품질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시방절에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개정된 한국산업표준(KS) 등에 따라야 한다.

4. 본부내 손끼임방지장치 설치 의무지구(단지내 최고 층수 16층이상 지구 전 세대 설치)에 대해 당초 1면 설치 손끼임방지재를 2면 설치 손끼임방지재로 설계변경 방침 결정하고,
5. 현장 설치(또는 예정) 손끼임방지재가 개정된 KS F 3109(문세트) 품질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이의 품질시험 의뢰를 실시하고, 이의 관련 품질시험비는 아래 시방서 12010 1.8.1 사. 조항 근거하여 현장 설계변경 방침 결정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8.1 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자재일 경우에도 감독자가 품질확인이 필요하여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현장에서는 개정된 KS 기준 준수를 위해 관련 시험성적서 확인 또는 품질시험 의뢰 업무에 철저를 기하시어, 추후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필요한 분쟁 등이 발생치 않도록 현장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국가기술표준원 유권해석(KS 개정 시행일 관련 질의 및 답변) 1부. 끝.

---

결재

소장 정영기

부장 전결 05/31  
최성욱

시행 대구경북주택사업1부-3637 (2021.05.31.) 접수

우 42838 대구광역시 달서구 상화로 272 (도원동 1445)

/ <http://www.lh.or.kr>

전화 053-603-2566 전송 0503-6994-2241 / [greenhome@lh.or.kr](mailto:greenhome@lh.or.kr) / 공개